

國際電子商去來時代를 對備한 BOLERO Project와 TradeCard System

安 秉 壽*

-
- I. 序 論
 - II. 國際電子商去來의 法的 受容基盤
 - III. 實務的 接近方法에 따른 Bolero Project의 展開
 - IV. 機能的 接近方法에 따른 TradeCard System의 展開
 - V. 結 論-BOLERO Project와 TradeCard System의 比較
-

I. 序 論

貿易거래의 目標가 交易 당사국의 富의 증진 및 소비 수준의 形평을 통하여 인류의 經濟生活을 潤澤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무역거래의 방법은 이러한 目標를 달성함에 있어 肯定的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즉, 貿易去來 方法도 經濟원칙에 따라 最小의 비용으로 最大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合理性과 效率性 그리고 安定性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貿易去來의 環境은 國內 商去來와는 相異한 要素들이 散在되어 있어 合理性과 효율성 이 발휘되는 것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 障礙의 克服과 回避를 위한 持續的인 努力이 傾注되는 것은 當然하다 하겠다.

貿易慣習은 이러한 무역거래상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무역상의 바람과 이를 뒷받침하는 運送, 通信, 保險, 金融 등의 諸制度의 支援으로 發展되어져 온 것으로 오늘날 國적을 달리하는 賣買當事者間에 직접 대면치 않고 船積書類를

* 朝興銀行 國際部 代理.

媒介로 하여 約定物品의 引渡와 代金의 支給이 可能하게 된 것은 무역관습의 발전 덕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무역관습은 운송, 통신, 보험, 금융 등의 제도에 영향을 되돌려 새로운 제도와 절차를 만들어내는 유기적 활동을 지속한다. 따라서 무역관습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해나가는 動的存在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무역관습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아마도 전통적인 종이 서류의 교환을 대신하는 電子資料交換(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方式과 인터넷의 활용 등 전자상거래의 출현이라 할 것이다. 電子資料交換 方式은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자료구조에 대하여 합의된 표준을 사용하여 가공 가능한 자료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¹⁾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그 長點으로는 去來費用의 節減, 重複 入力作業의 省略, 對顧客 反應性 向上 등을 들 수 있다.²⁾ 또 인터넷은 개별 통신망을 범세계적으로 상호 연결함으로써 자유로운 정보전달과 습득을 가능케 함은 물론 멀티미디어 매체의 활용과 사용자 지향의 활용방법까지 가미함으로써 가히 새로운 통신방법의 총아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이들은 모두 본래부터 지리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단순히 전자상거래라고 칭하더라도 당연히 국제전자상거래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방식의 도입은 기존의 무역관습 위에 새로운 방법을 추가하여 발전시키는 과정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무역거래관습에 존재하는 장애를 극복하여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전자상거래의 실현은 우선 각 거래 당사자가 이에 대한 이해와 實用意志를 가져야 하고 국제적인 去來標準이나 技術標準의 확립이 뒤따라야 하며, 法的 安定性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국내법 및 국제 규칙 등의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무역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간 많은 노력이 推進되어왔음을 살펴볼 수 있다. 즉, 國際적으로는 X.400³⁾과 TCP/IP⁴⁾

1) Ray Walker, "1992: Maintaining the UK's Competitive Edge in EDI," in Mike Gifkins & David Hitchcock(ed.), *THE EDI HANDBOOK Trading in the 1990s* (Blenheim Online, 1988), p.4.

2) Margaret A. Emmelhainz,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 Total Management Guide*(Van Nostrand Reinhold, 1990), p.20.

3) X.400은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1984년 제정한 컴퓨터간 통신 표준의 하나로 통신상의 제반 기능을 7단계로 볼 때 상위

등 각종 통신 표준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였고, UN/EDIFACT와 UN-CID와 같은 거래표준도 확립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電子式 船貨證券에 관한 CMI規則 1990」이나 「INCOTERMS 2000」, 「貨換信用狀 統一規則 및 慣例 1993」, 「UNCITRAL 電子商去來 모델법 1996」 등 많은 국제 법규가 전자자료교환 방식 혹은 전자상거래의 활용을 위해 개정 및 제정된 바 있다. 國內에서도 「貿易業務自動化 促進에 관한 法律」이 제정된 이후 「電子去來基本法」과 「電子署名法」 등의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어 국제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의 기반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이를 상업적으로 구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 중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는 국제운송분야에서 전자식 선화증권 실용코자 하는 BOLERO Project와 기존의 신용장 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결제방법을 대체하려는 TradeCaed System의 추진일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미 전개되고 있는 국제전자상거래 시대를 대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들 두 사업을 주목하여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제무역거래에서 새로이 자리잡을 신무역관습의 윤곽을 가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고는 먼저 국제전자상거래를 수용할 수 있는 非技術的 受容基盤으로서 국제무역법규, 각국의 국내법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의 법적기반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BOLERO Project와 Tradecard System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며, 이를 토대로 두 사업을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고는 범위를 좁혀 심도있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술적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논급하지 않으며, 상무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각종 문헌 및 각국의 법률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도구로 삼아 연구하는 문헌 중심의 연구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의 두 단계를 다루고 있으며, 메시지의 압축 및 암호화 처리 등을 수행하는 단계와 파일전환, 전자사서함, 네트워크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Robert J. Thierauf, *Electronic Data Interchange in Finance and Accounting* (Quorum Books, 1990), p.32.).

- 4) TCP/IP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의 약자로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며, IP는 데이터의 전송기능을 수행하고, TCP는 그 전송의 통제기능을 수행한다(이충배·이상진, 전자상거래의 이해와 활용, 두남, 1999, p.195.).

II. 國際電子商去來의 法的 受容基盤

1. 國際貿易法規上에서의 受容

(1) 貿易賣買法規上の 關聯規定⁵⁾

(가) 定型去來條件의 解釋에 관한 國際規則(2000)

무역매매계약은 거래 내용과 관련된 복잡하고 다양한 사항들을 매매 당사자의 자치적 의사에 따라 합의하여 계약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매 거래 때마다 이러한 합의를 하는 것은 합리성과 效率性에 비추어 적절치 않으므로 이를 CIF나 FOB와 같은 몇 가지의 형태로 정형화하여 그러한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하는 방법을 활용해 왔다. 흔히 Incoterms라 불리는 「定型去來條件의 解釋에 관한 國際規則 2000」은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는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의 1990년 개정에서는 개정원인을 특히 EDI 방식에 의한 貿易慣習을 反映하기 위함임을 밝혀두고 있으며,⁶⁾ 2000년 개정에서도 이를 수용하기 위한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⁷⁾ 즉, 1980년대 이후 급속히 확산된 EDI 기술이 무역매매에 도입되기에 이르러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매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새로운 EDI 방식 통신문도 종래의 종이 서류에 상응하는 약정품의 인도 증거 혹은 운송서류로 제공할 수 있음을 EXW를 제외한 모든 거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EDI 메시지를 사용하여 선화증권을 인도하는

5) 본 논문에서 다루는 국제규칙 또는 법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지는 못하였으나 ICC는 1996년 전자거래제도의 촉진을 위한 자율적 규제로서 GUIDEC(General Usage for International Digitally Ensured Commerce)를 제정하여 1997년 11월 수정한 바 있다(www.iccwbo.org/guide2.htm).

6) 'Why new Incoterms? The main reason for the 1990 revision of Incoterms was the desire to adapt terms to the increasing use of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 (ICC, *Incoterms 1990*, p.6.).

7) Why revision of Incoterms? (ICC, *Incoterms 2000*, p.7.).

경우, Incoterms 2000에서는 그러한 양도가 선화증권의 權利證券의 機能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ICC에서는 이러한 경우 계약내용에 1990년에 제정된 ‘電子式 船貨證券에 관한 CMI規則 :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이나 UNCITRAL의 ‘電子商去來에 관한 모델法(1996)’을 채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⁸⁾

요컨대, 무역매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 계약당사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호간의 오해와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감소시켜 왔던 Incoterms는 1990년 개정을 통하여 EDI의 활용을 가능케 하였으며, 2000년 개정을 통하여 EDI를 비롯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수용적 태도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1980)

국제물품매매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물품매매의 준거법으로서 어느 특정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 법적용의 豫見可能性과 法的 安定性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상거래 규범과 관련된 법률의 통일화를 지향하였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일명 비엔나협약 또는 CISG라고 함, 이하에서는 비엔나 협약이라 한다.’이다.

비엔나 협약은 국제거래에만 적용되며, 매매거래와 계약국간의 일정한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⁹⁾ 실질적으로는 계약국이 아닌 나라에서도 그 적용이 가능하므로¹⁰⁾ 국제적인 賣買契約의 準據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엔나 협약의 조문은 EDI가 활성화되기 이전인 1980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조항들에서 EDI 방식 등 전자적 매체에 의한 거래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1677년 영국에서

8) The Bill of Lading and Electronic Commerce (*Ibid*, pp.27~ 29).

9) 비엔나 協約 第1條 (1).

10)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준거법으로 채택한다든가, 계약국에 소재한 당사자와의 거래에서 계약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채택되는 경우 등에는 비계약국의 거래 당사자도 비엔나 협약에 관련된다(吳元爽 譯, UN統一賣買法, 三英社, pp.55~70.).

제정된 詐欺防止法(Statute of Fraud) 이래 많은 국가에서 채택해왔던 사항인, 契約의 充足要件으로써 署名된 書面을 요구하는 법률적 제약에 대하여 비엔나 협약에서는 매매계약이 서면에 의해 체결 또는 입증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여 電子式 媒體를 포함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契約締結이 可能하게 하고 있다.¹¹⁾ 또 서면의 정의에 전보와 텔렉스를 포함시키고 있어¹²⁾ EDI 메시지도 그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¹³⁾을 가능케 한다.

한편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의해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제 34 조의 조항¹⁴⁾ 역시 EDI 방식에 의한 전자식 서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⁵⁾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엔나 협약이 적용되는 무역매매에서는 매도인이 전자식 서류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 電送에 의한 貿易資料의 交換行爲에 관한 統一規則(1987)

EDI란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합의된 표준에 따라 컴퓨터가 처리 가능한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¹⁶⁾으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합의된(agreed)”이란 표현이다. 즉, EDI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은 EDI 자체

- 11) 비엔나 協約 第11條. A contract of sale need not be concluded in r evidenced by writing and is not subject to any other requirement as to form. It may be proved by any means, including witnesses(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 또는 입증될 필요가 없으며, 또한 형식에 관한 어떠한 다른 요건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매매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
- 12) 비엔나 協約 第13條.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writing’ includes telegram and telex. (본 협약의 적용에 있어, ‘書面’은 전보와 텔렉스를 포함한다).
- 13) 예컨대 미국의 Honnold와 일본의 新堀聰도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다(J.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Third Edition (KLI, 1999), p.129; 新堀聰, 國際統一買賣法, 同文館, 1991, p.18).
- 14) 비엔나 協約 第34條 If the seller is bound to hand over 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 he must hand them over at the time and place and in the form required by the contract. …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시기와 장소 및 형식에 따라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
- 15) A. H. Kritzer, *Guide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KL&TP, 1990), pp. Detailed Analysis-273~278.
- 16) H. B. Thomsen, “Interchange agreement,” *EDI and Law* (Blenheim Online, 1989), p.73.

의 실현과 그에 따르는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합의의 해놓고 그러한 합의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EDI 거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맺어진 합의를 交換約定(Interchange Agreement)이라 하고 이러한 교환약정은 거래당사자간의 EDI 거래관계를 지배하는 基本原則이 된다.¹⁷⁾

이러한 교환약정은 UN/ECE를 중심으로 하여 추진된 국제 규칙의 제정 대상으로 대두되게 되었다.¹⁸⁾ 그러나 교환약정에 대한 표준을 만들려는 이들의 의도는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가 서로 달라 제정이 불가능하고, 대신 통일규칙에 근거한 행위규범이 더 적절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에 따라 그러한 統一規則의 제정경험이 풍부한 국제상업회의소(ICC)로 작업이 이관되었다. 이러한 과정 끝에 1987년 국제상업회의소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 UNCID (Uniform Rules of Conduct for Interchange of Trade Data by Teletransmission)이며 그 목적은 당초의 EDI 교환약정에 관한 국제적 표준을 제정하는 것으로부터 EDI를 다루는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다리를 놓는 역할로 변경되었다.¹⁹⁾

교환약정에 관한 표준으로서의 UNCID의 限界는 적용범위가 전송되는 무역자료 메시지의 내용이 아닌 資料의 交換에 局限된다는 것에 있다.²⁰⁾ 이로 인하여 UNCID는 포괄적인 교환약정의 표준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통신약정으로서 후에 UN/EDIFACT의 일부로 포함되어 국제표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UNCID가 교환약정 표준으로 확립되는데 실패한 이후 UN/ECE WP.4는 1991년 3월 제 33차 회의에서 교환약정의 모델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1995년 제 41차 회의에서 'EDI의 국제 상업적 사용을 위한 모델 교환약정'(Model

17) 문희철·심상렬, 무역자동화, 무역경영사, 1996, p.196.

18) 이 작업은 UN/ECE WP.4의 후원하에 북유럽법률위원회(Nordic Legal Committee)에 의해 추진되어져 그 결과 "통신약정에 대한 통일규칙의 제안: Proposal for Uniform Rules for Communication Agreement(UNSA)"라는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N. Savage and I. Walde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UNCID," *EDI and Law* (Blenheim Online, 1989), p.68.

19) *Id.*, p.71.

20) 당초 UNCID의 초안으로 의도한 보고서에는 총 24개 조항으로 적용, 보안, 검증, 진정성확인, 인증, 비밀보장, 자료의 저장, 책임, 보험과 해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UNCID는 총 11개 조항으로 목적, 용어정의, 적용, 표준의 교환, 당사자의 주의 의무, 메시지의 전송, 전송의 확인, 내용의 확인, 무역자료의 보호, 자료의 보관,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Article 3.에서는 UNCID의 적용이 당사자간에 받아들여진 메시지 프로토콜에 의한 당사자간의 무역자료의 교환에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Interchange Agreement fo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Use of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이하 모델 교환약정이라 함)²¹⁾을 채택하여 이를 UN/EDIFACT의 일부인 UN/TDID에 포함시켜 국제표준으로서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 모델 교환약정은 총 7장으로 구성²²⁾되어 있으며, UN/ECE의 자료에는 주석서와 기술적 점검사항명세가 함께 첨부되어 있어 적용에 편의를 돕고 있다.

요컨대 EDI를 활용한 무역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거래 당사자의 법적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환약정은 UN/ECE가 주도한 UNCID와 모델 교환약정으로 표준화되었으며 이는 유엔 무역데이터 교환지침서(UNTDID)에 포함되어 메시지 표준인 UN/EDIFACT에 통합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전자식 메시지의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할 수 있는 근거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라) UNCITRAL의 電子商去來에 관한 모델法(1996)

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유엔貿易法委員會)이 작성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이하 모델법이라 함)은 실제 적용되기 위한 법으로서가 아니라 이름 그대로 각 국내법의 모델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²³⁾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의 명칭에서는 마치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전부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제정경위²⁴⁾가 말해주듯 전자상거래의 한 유형인 EDI, E-mail등에 의하여 작성된 전

-
- 21) 1995년 3월에 UN/ECE WP 4 제 41차 회의에서 채택한 권고에 이 회의에는 UN/ECE회원국과 우리나라, 호주, 브라질, 가봉, 일본, 세네갈 및 남아공화국 그리고 UNCITRAL, UNCTAD, ISO, ICC등 11개의 국제기구가 참석하였다. 이 권고는 교환약정 모델을 UN/TDID에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UN/EDIFACT의 일부를 삼는 것으로 되어있다(Recommendation 26, ECE/TRADE/WP.4/R.1133/Rev.1, 1996. 1, pp.1~2), www.unecce.org/trade/rec26en.htm 외.
- 22) 제 1장 적용 범위 및 구성, 제 2장 통신 및 운용, 제 3장 메시지의 처리, 제 4장 효력 및 강제가능성, 제 5장 데이터 내용의 요건, 제 6장 책임, 제 7장 일반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朴明燮·趙宗柱, “EDI의 國際商業의 使用을 위한 모델 交換 約定의 法的 問題點,” 韓國海運學會誌 第 26 號, 1998.7, pp.197~198.).
- 23) UNCITRAL은 전자상거래 모델법의 목적이 다음과 같다고 밝히고 있다.
①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법원칙의 제시, ② 전자상거래에 따른 법적 장애와 불명확성의 제거, ③ 관련 국제협약의 유용한 해석수단 제공, ④ 국제거래의 경제성과 효율성 촉진; UN,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WITH GUIDE TO ENACTMENT, www.un.or.at/uncitral/en-index; 崔竣瑋, “UNCITRAL 電子商去來 모델법과 우리나라의 電子去來基本法(案) 比較,” 比較私法 第 5 卷 2 號, 1998. 12, pp.48~49.

자문서(data message)의 法的 效力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델법은 EDI 메시지의 활용에 대한 법률적 인정에 필요한 根據 條項²⁵⁾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울러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요구를 충족한다는 조항²⁶⁾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명이 요구되는 경우 전자서명을 통하여 이를 충족할 수 있는 要件과 效力을 規定하고 있으며,²⁷⁾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²⁸⁾와 전자문서가 증거 능력과 가치면에서 부인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²⁹⁾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모델법은 실제로 적용되는 법이 아니므로 이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역매매에서 이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모델법을 당사자의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거나, 다른 국제 규칙 또는 국내법에서 수용하고 이를 통하여 무역매매에 적용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24) 모델법은 1984년에 UNCITRAL 제 17 차 회의에서 UNCITRAL 사무국이 내놓은 "Legal aspects of automatic data processing"라는 보고서에 의하여 처음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컴퓨터 기록의 법률적 가치, 서면의 요구, 인증문제, 선화증권 문제 등의 주제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UN/EDIFACT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던 UN/ECE의 활동을 주목하고 있었던 UNCITRAL은 이후 1985년의 제18 차 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주제로 채택하여 논의한 결과, 모델법의 바탕이 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후 1988년, 1990년, 1991년에 거듭되는 회의마다 내용이 보완되어 주로 EDI의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하여 초안이 작성되어오다가 1992년에 전자상거래라는 표현이 추가되며, 1995년에 모델법 초안을 완성하였고, 1996년 제 29 차 회의에서 그 명칭을 바꾸어 모델법으로 채택하였으며, 1998년에는 일부조항의 개정을 하였다.

25) 모델법 제 5 조.

Article 5. Legal recognition of data messages (최초 조문)

Information shall not be denied legal effect, validity or enforceability solely on the grounds that it is in the form of a data message.

Article 5 bis. Incorporation by reference (개정된 조문)

(as adopted by the Commission at its thirty-first session, in June 1998)

Information shall not be denied legal effect, validity or enforceability solely on the grounds that it is not contained in the data message purporting to give rise to such legal effect, but is merely referred to in that data message(1998년 6월에 개정된 조항은 데이터 메시지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한 문언메시지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메시지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여 종전에 비하여 법적 효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6) 모델법 제 6 조 (Article 6. Writing) (1) Where the law requires information to be in writing, that requirement is met by a data message ...

27) 모델법 제 7 조 (Article 7. Signature) (1) Where the law requires a signature of a person, that requirement is met in relation to a data message if: ...

28) 모델법 제 8 조 (Article 8. Original) (1) Where the law requires information to be presented or retained in its original form, that requirement is met by a data message if:

29) 모델법 제 9 조 (Article 9. Admissibility and evidential weight of data messages) (1) In any legal proceedings, nothing in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shall apply so as to deny the admissibility of a data message in evidence: ...

(마) UNCITRAL의 電子署名에 관한 統一規則 草案

전자식 선화증권을 비롯한 전자거래는 서면거래와 달리, 眞正性(authenticity)과 無缺性(integrity)³⁰⁾의 확보가 어렵고, 去來 否認(repudiation)³¹⁾의 위험을 안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면거래에서의 서명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電子署名³²⁾이 필요하고, 그러한 전자서명이 서면거래에서의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전자서명에 대한 세계 최초의 규범이라 할 수 있는 미국변호사협회(ABA)의 디지털 서명지침(Digital Signature Guidelines)이 제정된 이후, 미국의 여러 주에서 그리고 독일, 말레이시아, 우리 나라 등에서 전자서명법을 제정한 立法例가 있다.³³⁾

이렇게 각국에서 전자서명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지자 국제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UNCITRAL이 중심이 되어 '전자서명에 관한 통일규칙 (Uniform Rules on Electronic Signatures, 이하 전자서명 규칙 초안이라 함)'을 준비하고 있다. UNCITRAL의 전자서명 규칙 초안³⁴⁾은 크게 4장 19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전자서명을 단순한 전자서명과 고급 전자서명³⁵⁾ 그리고 디지털 서명³⁶⁾으로

30) 眞正性이란 진정한 메시지와 그 사본, 위조 또는 변조된 것과 구별되는 본래의 특성이며, 無缺性이란 전자메시지가 전송경로를 통해 이전되는 과정에서 전송오류나 고의에 의해 변경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1) 전자 메시지의 발신인이 수신인 측에서 전자 메시지를 위조 또는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발신한 메시지 내용을 부인하고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32) 전자서명이란 일반문서의 서명과 같이 전자문서에 있어서 그 작성자를 식별하고 데이터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승인을 나타낼 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의하여 사용된 데이터 메시지내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서명 또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현재 가장 유력한 전자서명방법으로는 공개키방식에 의한 디지털 서명이며, 향후에는 생체공학적(biometric)인 방법에 의해 구현되는 전자서명방법도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鄭完溶, "電子商去來와 電子署名法," 比較私法, 第 5 卷 2 號, 1998. 12, pp.139 ~141, p.161).

33) 孫晉華, "電子署名의 法的 課題," 比較私法, 第 5 卷 1 號(通卷 8 號), 1998.6, pp.37~38.

34) 1999년 2월 Vienna에서 열린 UNCITRAL 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의 제 34 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A/CN.9/WG.IV/WP.80; www.un.or.at/uncitral/english/sessions/wg_ec/wp-80.htm) 그러나 이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1999년 9월 Vienna에서 35 차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는 A/CN.9/WG.IV/WP.82 - Draft Uniform Rules on Electronic Signatures으로 정리되었다.

35) UNCITRAL 전자상거래작업부 제 33 차 회의(1998. 6. 29-7. 10, 뉴욕)에 우리나라 산업자원부 대표로 참석한 정완용 교수에 의하면 고급 전자서명(enhanced electronic signature)의 'enhanced'는 당초 'secure'라는 용어가 쓰였으나 이 용어가 법적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전자서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전자서명이 안전하지 않은 것(insecure)은 아니

세분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의 일반적 내용과 외국의 전자서명 및 인증기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³⁷⁾

요컨대 UNCITRAL의 전자서명 규칙초안은 전자서명기술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국제적인 認證機關의 役割을 인정하는 등 전자서명의 국제적 활용에 대한 착실한 대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眞正性 確保 등에 긍정적인 寄與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 國際運送法規上の 關聯規定

(가) 海上貨物運送에 관한 UN協約(1978)

海上貨物運送에 관한 UN協約(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이하 함부르크 규칙이라 함)은 기왕의 운송 관련 국제 규칙³⁸⁾을 보완한 것으로 운송인과 송화인간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危險, 權利 및 義務의 配分에 있어서 衡平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³⁹⁾ 함부르크 규칙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아직 가입하지 않고 주로 개도국들만이 가입하고 있어 비록 발효는 되었지만, 아직 국제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존의 운송관련 국제 규칙에서 나타난 운송계약 당사자간 權利義務의 衡平性 缺如를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UNCTAD와 UNCITRAL의 두 국제 기구가 제정에 참여함으로써 국제 규칙으로서의 가치는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함부르크 규칙 제 1 조⁴⁰⁾에서는 전보와 텔렉스를 서면으로 인정한다고 규정

므로 secure라는 표현대신에 enhanced를 쓰게 된 것이며, 이에 대해 UNCITRAL 사무국에서는 enhanced는 high quality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한다 (鄭完溶, 前掲論文, 각주 6.) 이에 고급전자서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36) 메시지 압축기능과 비대칭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변형한 것으로 이루어진 전자서명의 한 형태이다.

37) 이 규칙초안에 대한 번역은 손진화 교수의 홈페이지를 참조(<http://www.kyungwon.ac.kr/~profsjh/ec/wp76.htm>).

38) 1924년의 “船貨證券에 관한 法規의 統一을 위한 國際協約(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이하 헤이그 규칙이라 함)”과 이 헤이그 규칙의 개정에 관한 1968년의 비스비의 정서(Visby Protocol, 1968)를 말한다.

39) 함부르크 규칙의 내용에 대하여는 吳元爽, 國際運送論, 博英社, 1999, pp.172~177. 참조.

40) Article 1. Definitions. In this Convention: ... 8. 'Writing' includes, inter alia,

하고 있으며, 제 14 조⁴¹⁾에서는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국가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선화증권상의 서명이 전자적인 수단에 의해서도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식 선화증권의 수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UNCITRAL 사무국이 작성한 함부르크 규칙의 주석⁴²⁾에도, 함부르크 규칙은 헤이그 규칙과 마찬가지로 송화인의 요구에 따라 선화증권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때 헤이그 규칙에서 수기 서명만을 인정하는 데 비하여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電子의 技法에 의한 署名도 認定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1978년에 제정된 함부르크 규칙이 10여년 후에나 등장하는 전자식 선화증권의 개념을 포함한 기술의 발전을 예측하여 규칙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초안을 작성한 UNCITRAL의 전자 거래에 대한 선도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國際貨物複合運送에 관한 UN協約(1980)

國際貨物複合運送에 관한 UN協約(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1980, 이하 UN 복합운송협약이라 함)은 컨테이너를 활용한 一貫運送의 一般化와 함께 複合運送이 活性化됨에 따라 복합운송인의 책임과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통일된 국제협약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1980년 UN에서 제정하였다.⁴³⁾ 이 협약은 제정 과정에서 먼저 제정된 함부르크 규칙에 상당부분 의존하였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 1 조의 10 항⁴⁴⁾에서는 전보와 텔레스가 서면을 의미한다는 규정이 있

telegram and telex.

- 41) Article 14. Issue of bill of lading. 3. The signature on the bill of lading may be in handwriting, printed in facsimile, perforated, stamped, in symbols, or made by any other mechanical or electronic means, if not inconsistent with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bill of lading is issued.
- 42) 11. Transport documents (a) Bills of lading 34. Under both the Hague Rules and the Hamburg Rules, the carrier must issue a bill of lading if the shipper requests one. However, the Hamburg Rules take into account modern techniques of documentation by providing that a signature on a bill of lading not only may be handwritten but also may be made by any mechanical or electronic means, if not inconsistent with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bill of lading is issued(Explanatory note by the UNCITRAL Secretariat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Hamburg) paragraph 34(www.un.or.at/uncitral/english/texts/transport/hamburg.htm#TOP)).
- 43) 梁煥燾·徐正斗, 國際貿易法規, 三英社, 1994, p.602.

으며, 제 5 조 3 항⁴⁵⁾에서는 복합운송서류에서의 서명은 해당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手記는 물론 팩시밀리와 스탬프를 비롯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제 5 조 4 항⁴⁶⁾에서는 수화인이 동의할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해 비유통성 복합운송서류를 발급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으로 미루어 UN 복합운송협약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운송서류의 실용화에 별다른 저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UN 복합운송협약은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로도 조속한 발효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국제복합운송에 이 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오늘날의 국제복합운송인과 송화인의 책임한계에 대한 중요한 해석기준으로 원용되고 있어 그 나름대로의 존재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 電子式 船貨證券에 관한 CMI規則(1990)

1990년 6월 國際海事委員會에서 제정한 電子式 船貨證券에 관한 CMI規則(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은 관계 당사자가 이 규칙에 따라 거래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任意的 規則이다.⁴⁷⁾ 이 규칙은 자료 전송에 따른 당사자의 행위 규범으로 ICC가 제정한 UNCID를 따르며, 전송자료는 국제표준으로 확립된 UN/EDIFACT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⁴⁸⁾ 한편 전자식 선화증권은 종이 선화증권이 포함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⁴⁹⁾ 기존에 선화증권의 점유로 가능했던 물품의 청구권 및 처분권의 이

44) Article 1. Definition. 10. 'Writing' means, *inter alia*, telegram or telex.

45) Article 5. Issue of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3. The signature on the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may be in handwriting, printed in facsimile, perforated, stamped, in symbols, or made by any other mechanical or electronic means, if not inconsistent with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is issued.

46) Article 5. Issue of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4. If the consignor so agrees, a non-negotiable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may be issued by making use of any mechanical or other means preserving a record of the particulars stated in article 8 to be contained in the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In such a case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after having taken the goods in charge, shall deliver to the consignor a readable document containing all the particulars so recorded, and such document shall for the purposes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e deemed to be a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47) 電子式 船貨證券에 관한 CMI規則. 第1條.

48) 電子式 船貨證券에 관한 CMI規則. 第3條.

49) 電子式 船貨證券에 관한 CMI規則. 第4條.

전을 유효한 개인키를 가짐으로써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⁰⁾ 그러나 선화증권의 物權的 效力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이에 대하여 규칙의 제정과정에서 일본 대표로 참여했던 江頭憲治郎 教授는 물권적 효력의 이전방법에 대하여는 각국이 서로 다른 입법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⁵¹⁾

전자식 선화증권의 眞正性 確保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개인키에 대하여는 특정 기술에 의한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직 전자식 선화증권의 權利의 證明에만 사용되는 유일한 것으로 전자식 방법에 의하는 것이라고만 규정⁵²⁾함으로써 신기술의 수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두 가지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선 개인키의 정당한 소지인이 종이 형태의 선화증권을 받을 수 있는 選擇權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⁵³⁾ 전자식 선화증권의 수취에 필요한 설비가 없는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자식으로 활용되는 때에는 국내법이나 판례, 관습에서 서면과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전자 데이터가 서면과 동등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규칙에서는 전자식 선화증권의 자료와 개인키의 관리를 담당하는 인증기관을 운송인이 맡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SeadDocs의 실패⁵⁴⁾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운송인이 인증기관이 되는 경우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엄청난 자금⁵⁵⁾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과 운송계약의 당사자 중 하나인 운송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된다.⁵⁶⁾

요컨대 CMI가 제정한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규칙은 전자식 선화증권의 실용을 전제로 하여 관련된 법률적 문제 및 기술적 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까지 문제가 되었던 權利證券的 機能의 電子化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취

50) 電子式 船貨證券에 관한 CMI規則. 第7條.

51) 江頭憲治郎, “電子式船荷證券のためのCMI規則について”, 海法會誌, 復刊 第34號, 1990, p.10.

52) 電子式 船貨證券에 관한 CMI規則. 第8條.

53) 電子式 船貨證券에 관한 CMI規則. 第10條.

54) Chase Manhattan 은행은 SeadDocs와 함께 전자식 선화증권의 상업화를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55) 일본에서 概算된 바에 따르면 초기 구축비용으로 250 억엔, 운영비로 연간 30 억엔이 필요하다고 한다(江頭憲治郎, “電子式船荷證券のための万国海法會規則と船積書類の革新”, 安田火災記念財團叢書 No. 35, 1991).

56) 江頭憲治郎, “電子式船荷證券のためのCMI規則について”, 海法會誌, 復刊 第34號, 1990, p.10.

하고 있으며, 전자문서증 가장 구현이 어려운 전자식 선화증권의 실용에 있어 이후 제정된 많은 國際規則과 國內立法을 先導한 중요한 국제규칙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貿易決濟 關聯規則

(가) 貨換信用狀 統一規則 및 慣例(1993)

흔히 'UCP 500'이라 불리는 貨換信用狀 統一規則 및 慣例(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ICC Publication No. 500, 이하 UCP 500이라 한다)는 EDI 방식에 의한 무역이 활성화되는 등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ICC가 1993년에 개정한 것이다.⁵⁷⁾ 화환신용장 업무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을 비롯하여 많은 금융기관들은 SWIFT 시스템⁵⁸⁾에 가입하여 이를 통하여 신용장 개설 및 변경의 통지를 電子 메시지⁵⁹⁾로 전송하고 있어 전자적 거래환경에 익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신용장 통일규칙에 명확하게 전자식 서류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 다만, 몇몇 조항에 그러한 전자식 서류의 활용을 容認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언을 담고 있다.⁶⁰⁾

먼저 제1 조에서는 모든 신용장에 UCP 500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문구는 ICC 은행위원회에 의해 일반적으로 선적서류를 전제로 한 화환신용장에 적용하는 신용장 통일규칙을 서류의 우송없이 거래하는 EDI 방식

57) 梁煥煥·吳元爽·徐正斗, 信用狀論, 三英社, 1993, pp.474~476.

58)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世界銀行間金融電信網)는 1973년 15 개국 239 개 은행이 창립하여 3년간의 시험을 거쳐 1977년부터 22 개국의 518 개 은행을 대상으로 메시지 교환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1992년 3월부터 정식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 9월 현재 189 개국 6,710 개 금융기관(그 중 은행은 2,234)이 가맹하여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 1998년의 총 메시지 건수는 약 9억건이며, 매일 평균 2조 달러이상의 지급 메시지가 교환되고 있다(<http://www.swift.com/general/pages/factsfig.htm>).

59) MT 700, MT 701: Issue of a Documentary Credit, MT 707: Amendment to a Documentary Credit.

60) 이는 1990년 6월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ICC의 은행기술관행위원회에서 EDI에 관한 조항을 독립하여 두지 않으며, 개정 당시 존재하는 EDI 관행만을 수용할 방향의 기술적 발전을 대비한 조항을 두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신용장이 본래 서류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대원칙을 존중하고 신용장 통일규칙이 갖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ICC,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 p.3).

의 신용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EDI 또는 SWIFT 방식의 신용장에 있어서는 전자 메시지에 의하여 신용장 통일규칙에 관한 준거문언을 삽입함으로써 당연히 이 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⁶¹⁾

다음으로 신용장 통일규칙 제 20 조 b항은 수리되는 원본서류에 관하여 자동화되어지거나 컴퓨터화된 시스템에 의해 작성되고⁶²⁾ 서명이 필요한 경우 전자적 방법의 인증에 의해 서명되어질 수 있다⁶³⁾고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서명이 첨부된 전자 메시지가 서명된 종이문서 대신에 제시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⁶⁴⁾

한편 UCP500의 제 37 조에서는 UCP400과 달리 상업송장의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조항⁶⁵⁾을 넣고 있는데 이는 신용장에서 특별히 송장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서명된 송장을 요구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또한 자동화되거나 컴퓨터화된 시스템에 의해 송장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⁶⁶⁾ 따라서 이 또한 선적서류의 전자화에 부응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무역매매의 결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신용장에 관한 해석기준이라 할 수 있는 신용장 통일규칙에는 전통적인 종이 서류방식의 무역관행을 존중하면서도 전자적 방식에 의한 무역거래를 수용하기 위한 조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貿易慣行을 認定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1) 그러한 준거문언이 생략되어지더라도 SWIFT에 의해 개설되고 통지된 한 그러한 신용장은 신용장 통일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ICC, *op. cit.*, p.3).

62) ...have been produced: i. by reprographic, automated or computerized systems ;.

63) ...a document may be signed by ...any other mechanical or electronic method of authentication.

64) ICC는 이 조항의 변경목적에 대하여 무역과 금융의 전자적 통신의 단순한 적용을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ICC, *op. cit.*, p.59).

65) UCP 500 Article 37 - Commercial Invoices. a. ... iii. need not be signed.

66) ICC, *op. cit.*, p.100.

(나) 國際 스탠드바이 慣習(1998)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이를 규율하는 國際的 規則이 缺如되어 있는 것이 그 활용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⁶⁷⁾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국제상업 회의소와 국제은행법률협회⁶⁸⁾가 공동으로 제정하여 1998년 4월 6일의 국제상업 회의소 은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 國際 스탠드바이 慣習(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 ICC Publication No. 590)이다. ISP98은 신용장 통일규칙(1993)과 請求出給保證書에 관한 統一規則(URDG 1992)과 같은 취지를 가지고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하여 분리 제정되었으며,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1995)과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⁶⁹⁾

ISP98의 특징 중 하나는 化환신용장이 서류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달리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유통성 서류의 제시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자 메시지 형태의 서류제시가 많을 것이라는 추측과 SWIFT가 제정과정에 참여한 것에 따른 전자적 수단 사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있다는 점이다. 즉, 1.09. 용어정의에서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와 전자적 기록에 의한 인증(authenticate), 전자적 기록(electronic record),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전자기록의 제시에 대한 접수(receipt), 원본(original)등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3.6 제시의 매체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정하면 전자적 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는 ISP98이 물품매매에 적용된다면 전자식 선적서류의 제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향후에 개정될 신용장 통일규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67) 朴錫在, “스탠드바이(Standby)信用狀의 活用上의 問題點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96, pp.108~109.

68)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and Practice, Inc.

69) IIBLP,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Fall 1997 Draft, pp.1~2.

2. 各國의 國內法上에서의 受容

(1) 美國의 境遇

미국변호사협회(ABA)는 1995년 '電子署名指針'⁷⁰⁾을 공표하는 등 전자상거래의 법적 안전 및 정보안전과 정보기술에 관한 기타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이 협회의 영향으로 Utah 주가 1995년에 디지털서명법⁷¹⁾을 제정한 이래 최근에는 Illinois 주의 전자상거래안전법⁷²⁾이 제정되는 등 활발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통일주법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와 미국법협회(The American Law Institute)는 당초 전자상거래에 관한 통일된 주법을 마련하여 이를 미국통일상법전(UCC) Article 2에 반영하려 하였으나 최근 독립법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⁷³⁾

이상의 활동 내용으로 미루어 미국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민간과 정부차원의 노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日本의 境遇

일본은 통산성에 설치된 '電子商去來環境整備研究會'가 1995년 4월부터 전자상거래의 제도적 환경의 정비에 관하여 포괄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중간보고서 형태로 완성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어떤 과제가 있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는데 그쳤으며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제시는 회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제도적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실제로 실행하는 실무적 경험을 거칠 필요가

70) ABA, Digital Signature Guidelines(Aug. 1, 1996).

71) Utah Digital Signature Act, Utah Code Ann. § 46-3-101에서 504(1995); <http://www.le.state.ut.us/~code/TITLE46/46-03.htm>(96.8.1 개정).

72) Illinois Electronic Commerce Security Act(Aug. 1998).

73) NCCUSL, Revision of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2-Sales, May 1998 Draft(www.law.upenn.edu/library/ulc/ulc.htm#ucc2),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April 1999)(www.nccusl.org/pressrel/2brel.html).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⁷⁴⁾

한편 일본 법무성도 1996년 7월 ‘電子去來法制에 관한 研究會’를 설치하고 전자거래에 관하여 발생하는 여러 법적 문제에 관하여 민법 및 상법의 입장에서 검토를 시작하였고 법적 정비의 필요성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電子認證制度 및 電子公證制度에 관하여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⁷⁵⁾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전자거래에 관한 국내 입법이 있었다는 발표는 아직 없다. 이에 대하여는 일본의 계약법이 서명이나 서면에 의한 계약만을 인정하지 않고 諾成主義가 관철되고 있으며, 증거법에 관해서도 自由心證主義가 채용되어 있어 입법상의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법적 조치가 없어도 전자상거래에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⁷⁶⁾에 서두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요컨대 일본에서는 비록 전자상거래를 수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져 있지는 않으나, 전자상거래가 실용화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된다면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3) 獨逸의 境遇

독일의 경우 1997년 6월 ‘情報서비스 및 通信서비스에 관한 條件 規制法 (Entwurf eines Gesetzes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en für Information und Kommunikationsdienste)’이 연방의회를 통과하였는데 이 법은 원격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Tele dienste gesetz), 원격서비스에서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Tele dienste daten schutz gesetz), 전자서명법(Signatur gesetz)의 제정을 포함하여 형법, 질서위반법, 청소년에게 해로운 문서의 반포에 관한 법, 저작권법, 가격표법 등 6개의 법률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옴니버스 법이다.⁷⁷⁾

그 중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전자서명법으로 여기에서는 인증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전자서명법의 발효에 따라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은

74) 内田貴, “電子商去來と法,” NBL 600號(1996. 9.1), pp.38~39.

75) 電子取引法制にする研究會, “電子取引法制にする研究會中間報告書,” NBL 615호(1997. 4.15), p.17 이하.

76) 内田貴, 電子商去來와 法, 1997년 10월 24일 東亞大學校 강연원고(<http://www.eclaw.net/html/m4-1-3.htm>).

77) 정완용, “인터넷의 이용과 그 법적 규제,” 형사정책연구소식 제41호(1997. 5), p.18.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 예측되며,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구현에도 별다른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 英國의 境遇

英國은 1992년 海上貨物運送法(The Carriage of Goods Sea Act 1992)을 개정하였다. 이 법은 1855년에 제정된 船貨證券法(Bills of Lading Act 1855)을 代替한 것으로 주로 訴訟權을 다루고 있지만 EDI 거래에 적용되어질 조항⁷⁸⁾을 두고 있다. 즉, 이 법이 적용되는 서류의 발행과 배서, 교부 및 기타 이전, 또는 이들 서류와 관련된 그 밖의 일체의 행위에 해당하는 거래를 실행하기 위하여 원격전송 시스템(telecommunication system) 또는 기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개정을 통해 영국에서는 현재의 기술 혹은 향후 개발되어질 기술을 적용한 전자식 선화증권 등 전자상거래의 실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⁷⁹⁾

한편 전자문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民事證據法(Civil Evidence Act, 1968)에서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의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어⁸⁰⁾ 일단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傳聞證據(heresay evidence)⁸¹⁾ 排斥의 法則에서 예외로 받아들여질지의 의문이 남지만, 증거가 되는 서류를 생성한 컴퓨터가 문제가 되는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⁸²⁾

78) Carriage of Goods Act, 1992. § 1(5)

The Secretary of State by regulations make provision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ct to cases where a telecommunication system or any other information technology is used for effecting transactions corresponding to -

(a) the issue of a document to which this Act applies;
(b) the indorsement, delivery or other transfer of such a document; or
(c) the doing of anything else in relation to such a document.

79) I. M. Carr, "Current Developments Concerning the Form of Bills of Lading-Great Britain," *Ocean Bills of Lading: Traditional Forms, Substitutes, and EDI Systems*, KLI, 1995, p.179.

80) 영국 Civil Evidence Act, 1968. § 5.

81) 傳聞證據(heresay evidence)란 증인이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증언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심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진술로 이러한 진술에 대하여 진실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傳聞證據를 증거로서 채택하지 않는 것을 傳聞證據 排斥의 法則이라 한다. 그러나 Civil Evidence Act 1968에서는 전문증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田中英夫, 英米法辭典, 東京大學出版會, 1991, pp.404~405.

이처럼 오늘날 무역관습의 기초를 제공한 영국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무역 거래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에서 이러한 법률들이 적용되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3. 우리 나라에서의 法的基盤

(1) 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 관한 法律 (1993)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 4479호로 제정공포된 이 법률은 이듬해인 1992년 7월 1일 발효되었고 1993년 3월 6일 법률 제 4541호로 개정된 바 있다. 이 법은 제정당시 세계최초로 EDI를 법제화한 성문법으로 주목을 받았다.⁸³⁾

이 법은 이후 국내외의 이 분야 입법에 많은 준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나 貿易業務分野에 대한 特別法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한 전자거래의 일반적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른 특별법들이 양산되는 發端을 提供하였다는 지적이 있다.⁸⁴⁾ 이 법의 구성은 크게 7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강행법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 보칙과 벌칙을 두고 있다. 중심이 되는 규정은 제 4장 전자문서의 표준화 및 효력에 관한 조항으로 여기에서는 電子文書의 型式의 效力,⁸⁵⁾ 電子署名의 效力 等,⁸⁶⁾ 電子文書의 到達時期,⁸⁷⁾ 電子文書의 內容의 效力⁸⁸⁾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국내에서 전자적 방식에 의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역자동화 망을 활용하여 관련자간에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전자적 방식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국내에 한해서는 이미 그 법적 뒷받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82) I. M. Carr, *op. cit.*, p.182.

83) 日本貿易關係手續簡易化協會, 貿易手續의EDI化に係る法的諸問題, JASTRO, 1992, p.106.

84) 이진우, 전자거래의 법적검토, <http://bora.dacom.co.kr/~kafil>.

85) 貿易業務自動化 促進에 관한 法律 第13條.

86) 貿易業務自動化 促進에 관한 法律 第14條.

87) 貿易業務自動化 促進에 관한 法律 第15條.

88) 貿易業務自動化 促進에 관한 法律 第16條.

(2) 貨物流通促進法(1995)

선진국에서 전자상거래가 처음 시작될 때, 物流와 流通分野에서 시작된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나라의 경우 물류체계의 합리화에 관한 특별한 법제화 노력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1995년 11월 30일 전면 개정을 통하여 물류의 표준화, 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합리화를 위하여 전자거래제도를 법제화한 貨物流通促進法은 앞의 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 관한 法律과 마찬가지로 電子文書의 效力,⁸⁹⁾ 電子文書의 到達時期⁹⁰⁾ 등과 함께 專擔事業者의 指定⁹¹⁾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處罰條項⁹²⁾을 두고 있는 것도 유사하다. 이렇게 법규의 내용이 유사한 것은 적용대상이 서로 다를 뿐 전자거래 관련 내용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에 국한하여 규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電子去來基本法(1999)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여 그 安全性과 信賴性的 確保 및 去來의 公正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전자거래⁹³⁾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⁹⁴⁾으로 제정된 電子去來基本法은 1999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서명 역시 서면상의 署名 또는 記名捺印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⁹⁵⁾ 또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는 公認認證機關을

89) 貨物流通促進法 第48條의 4.

90) 貨物流通促進法 第48條의 5.

91) 貨物流通促進法 第48條 第3項.

92) 貨物流通促進法 第54條 및 第55條.

93) '전자상거래'라는 표현 대신에 '전자거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거래의 당사자가 상인에 국한되거나 상행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한웅길, "전자거래와 계약법," 比較私法 第5卷 2號, 1998.12, p.8 주석 1)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전자거래는 상인간 혹은 상인과 비상인간 등 상행위가 일반적이라는 취지에서 전자상거래라는 표현이 옳다는 주장도 있다(1998년 10월 10일의 한국비교사법학회 창립 4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였으며 논문제목 등에도 전자상거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94) 電子去來基本法 第1條.

95) 電子去來基本法 第5條 및 第6條.

전자서명법의 규정⁹⁶⁾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비대칭공개키 방식에 의한 디지털 서명만을 전자서명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電子去來基本法은 앞서 살펴본 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몇몇 조항에서는 차이⁹⁷⁾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이 주로 EDI를 대상으로 하여 제정된 것과 달리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 前者가 국제적 모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특정국에 국한되는 사항의 規定條項을 회피한데 비해 후자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 부합되는 현실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차이도 있다.

電子去來基本法의 特徵을 보면 EDI만이 아니라 전자거래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법으로서 민법이나 상법에 대하여는 특별법적 지위에 있지만, 전자서명법과 같은 법에 대하여는 일반법적 역할을 하게 되며, 조항별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변경적용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일부 조항의 위반에 관해서는 처벌을 받는 强行法的 性格도 지닌다.

요컨대 국내에서의 전자거래에 대하여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규율되므로 이 법의 제정과 운용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무역거래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데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電子署名法(199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에서는 電子署名의 役割이 絕對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 및 활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 자체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⁹⁸⁾

電子署名法의 特徵은 전자서명의 기법 중 특히 비대칭암호화 공개키 방식에

96) 電子署名法 第4條.

97) 두 법의 비교에 대하여는 崔竣瑤, "UNCITRAL 電子商去來모델법과 우리 나라의 電子去來基本法(案) 比較," 比較私法 第5卷2號, 1998.12, pp.43 이하 및 孫晉華, "電子商去來에 관한 立法의 현황과 과제," 比較私法 第5卷2號, 1998.12, pp.163 이하를 참조.

98) 電子署名法 第1條.

의한 디지털 서명만을 전자서명으로 인정⁹⁹⁾하고 있어 전자서명의 기술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다. 이는 이미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칭암호방식에 의한 전자서명이나 향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활용이 예견되는 생체공학적 방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인정치 않고 있는 것이며, UNCITRAL에서 제정 중인 電子署名統一規則 草案 또는 우리 나라의 電子去來基本法과도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법적용의 혼란이 우려된다.

또 電子署名의 活用に 있어 공인인증기관¹⁰⁰⁾에 의한 인증서¹⁰¹⁾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공인기관을 정부기관 등으로 국한하고 이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점과 특정 기술에 의존한 전자서명만을 인정하는 것은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의 발전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외국과의 교류를 함에 있어 저해요인이 될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운용이 요구된다.

요컨대 電子式 船貨證券의 實用에 있어서 電子署名의 法的 效力 및 眞正性 確保는 核心的 要素이므로 이에 대한 국내의 명확한 법률이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이러한 법률은 국제적 동향과 국내의 다른 입법과 그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어긋나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¹⁰²⁾

99) 電子署名法 第2條의 2.

100) 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자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電子署名法 第2條의 9 및 同法 第4條).

101) 공개된 암호(전자서명검증키)가 전자서명을 한 당해 자연인 혹은 법인이 갖고 있는 비공개 암호(전자서명생성키)와 합치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電子署名法 第2條의 7).

102) 현재 전자식 선화증권의 상업적 실용을 추진하고 있는 Bolero Project는 비대칭공개키 방식에 의한 디지털 서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우리 나라의 전자서명법과 기술적 배경에서는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Ⅲ. 實際的 接近方法¹⁰³⁾에 따른 BOLERO Project의 展開

1. 出現背景과 基本概念

1990년 CMI에 의해 '電子式 船貨證券에 관한 CMI規則'이 제정되고, 이후 1996년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이 제정되는 등 범세계적으로 전자거래에 대한 법적 환경이 정비되는 한편, 전자 메시지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암호화 기법도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무역거래 전반에 관련된 선적서류 전체를 電子化하여 이를 商業的으로 適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즉, 1994년 6월 홍콩,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의 해상운송회사, 은행, 통신회사 등이 참여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시작된 Bolero Project (Bill of Lading for Europe,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는 무역거래에 필요한 종이서류를 전자메시지로 전환하여 安全하게 交換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⁰⁴⁾ Bolero Project에서는 선화증권을 포함하여 貿易書類 全般에 걸친 電子化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화증권 단독의 전자화 시도에 그친 과거 유사한 시도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즉, 이제까지 권리증권적 기능의 전자적 유통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막혀 무역서류 전체의 통합 전자화를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전자거래 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에 따라 貿易書類 全體의 電子的 유통이 商業的인 대상으로 추진되기에 이른 것이다.

Bolero Project는 SWIFT와 TT Club¹⁰⁵⁾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들이 합

103) 종이서류 시스템을 전자서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實際的 接近方法(substantial approach)」이라 불리우며 既存의 모든 節次를 그대로 維持하면서 단지 종이서류를 電子書類로 代替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업무체계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경우 나타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機能的 接近方法(functional approach)」으로 불리우며 이는 컴퓨터를 도입함으로써 필요없게 되거나 혹은 重複되는 業務節次를 省略하고 效率性을 最大로 發揮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104) J. Livermore & K. Euarjai, "Electronic Bills of Lading: A Progress Report,"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 28. No. 1, January, 1997, p.58.

105) Through Transport Club: 해상화물 운송 부문의 P&I 클럽으로 80여개국의 운송업자, 운송주선인, 항만당국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선단의

작으로 설립한 Bolero Operation Ltd는 사용자 그룹인 Bolero 협회¹⁰⁶⁾와 함께 범세계적으로 무역서류의 전자화를 통한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olero Project는 1995년 7월부터 3개월간 法的, 技術的 타당성 검토를 위한 테스트¹⁰⁷⁾를 거쳤으며, 이후 전세계 18개 貿易圈¹⁰⁸⁾에 대한 법률 분석을 완료(1999. 1)하고 시범서비스 기간을 (1999. 1~1999. 6) 거쳐 상용서비스의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2. 運用節次 및 實用上의 特徵

Bolero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역서류 전체의 전자화에 따른 무역업무 처리절차는 크게 사용자 등록절차와 무역거래 처리절차로 나누어지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使用者 登錄節次

① 사용자가 공개키¹⁰⁹⁾와 비밀키¹¹⁰⁾의 한 쌍을 작성하고 공개키를 R/A¹¹¹⁾로 보낸다.

② R/A는 사용자 ID와 공개키를 결합시켜 이를 C/A¹¹²⁾로 보낸다. 또 사용자에게는 IC 카드를 발급하여 송부한다.

2/3, 1,725 개의 항만시설, 5,890 사의 운송업자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고 있다; TT Club, <http://www.boleroltd.com/whois/ttclub.htm>.

106) Bolero Association Ltd.는 1995년 설립되어 1998년 9월 현재 수출입업자, 선사, 운송주선인, 보험회사, 상업회의소 등 약 200 개의 회원으로 구성된 Bolero 서비스의 사용자 그룹으로서 Bolero의 서비스를 회원의 요구에 적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07) 이 pilot test의 결과에 대하여는 安秉壽, “電子式 船積書類의 實務適用實驗의 結果考察,” 貿易商務研究 第11卷, 韓國貿易商務學會, 1998. 2, p.563 이하 참조.

108) 미국, 벨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델란드, UAE,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

109) 공개키(Public Key)는 비대칭 암호화 방식의 전자서명에서 비밀키(Private key)로 생성한 전자서명의 진정성을 검증하는데 활용되는 키이다.

110) 비밀키(Private Key)는 자신이 작성한 문서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첨부되는 전자서명을 생성하는데 활용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 쌍으로 작성된 공개키(Public Key)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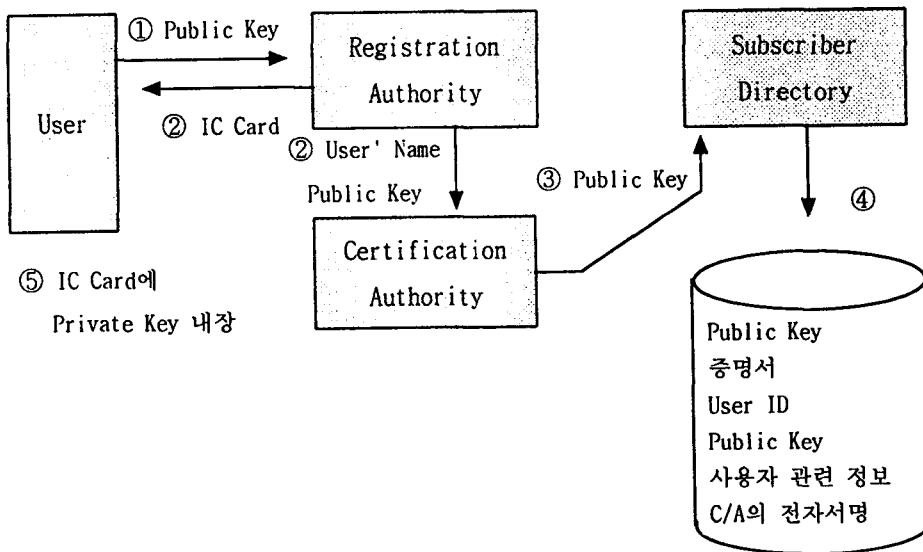
111) Registration Authority(등록기관)은 Bolero 기구의 하나로 비밀키와 공개키의 등록 접수 및 비밀키가 내장된 IC카드의 발급업무를 담당한다.

112) Certification Authority(인증기관)은 Bolero 기구의 하나로 사용자의 본인확인(Identify)을 위한 전자적 증명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③ C/A는 R/A로부터 받은 사용자 ID와 공개키에 전자서명하여 공개키에 대한 증명으로서 S/R¹¹³⁾에 보낸다.

④ S/R은 공개키 증명서를 등록하고 저장한다.

⑤ 사용자는 R/A로부터 받은 IC카드에 자신의 비밀키를 내장시킨다.¹¹⁴⁾ 이상의 등록절차를 圖示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Bolero Project에서의 使用者 登錄 節次

(2) 貿易去來 處理節次

① 사용자는 사용자작업환경이 갖추어진 PC나 단말장치를 통하여 C/R 앞으로 메시지¹¹⁵⁾를 송신한다. 이 때 비밀키가 내장된 IC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자

113) Subscriber Directory(사용자 명부)는 사용자에게 관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DB 또는 기관이며, 무역거래의 서류를 전자화한 전자문서(DB)를 관리하는 C/R과는 분리되어 운영된다.

114) 사용자가 IC 카드에 비밀키를 내장시킬 장비(IC Card Writer)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R/A가 대신할 수도 있다.

115) 이러한 메시지는 선복신청, 전자식 선화증권의 발행 및 권리이전, 보험증명서의 발급, 화물도착통지, 인도지시, 세관의 통관허가, 신용장 개설 신청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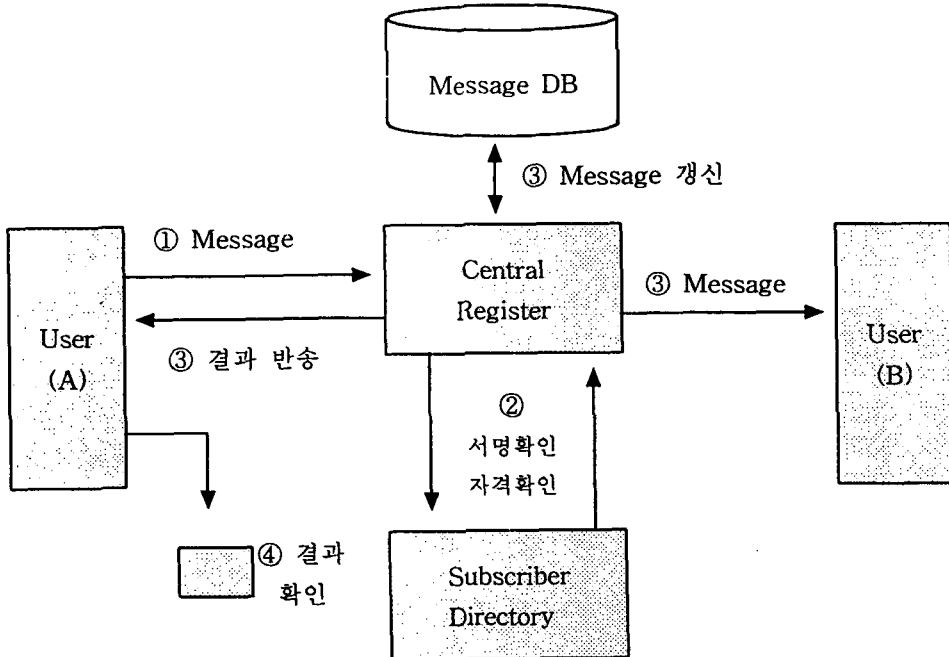
동적으로 디지털 서명이 작성되어 UN/EDIFACT 형태로 변환된 메시지에 첨부된다.

② C/R은 사용자의 공개키를 S/R 상에서 찾아, 이 공개키를 사용하여 디지털 서명이 첨부된 메시지를 확인한다. 또 공개키 증명서상의 자료에 의해 요구한 처리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자격을 확인한다.

③ 디지털 서명이 일치하고 요구한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자격이 유효한 경우 메시지 DB의 갱신을 하고 이를 관련 당사자에게 전송한다. 또 처음 메시지를 송신한 사용자에게도 결과 메시지를 전송한다.

④ 사용자는 C/R로부터 온 결과 메시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모두 송신자의 디지털 서명이 첨부되어 있으며 이를 공개키를 통해 검증하고 EDIFACT 형태의 메시지를 단말기나 PC에 맞게 변환한다.

이러한 절차를 圖示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Bolero Project에서의 貿易去來 處理 節次

무역서류 전체의 상업적 실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Bolero Project에서는 과거 전자식 선화증권만의 실용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安全性과 信賴性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중앙등록기관의 운영에 있어서는 SeaDocs가 구현한 전자식 선화증권의 실용화에서 문제가 되었던 특정 은행 중심의 운영이나,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이 중앙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CMI규칙상의 방법을 회피하고, 전세계 은행이 회원으로 출자하여 운영되고 있는 SWIFT와 운송업계에서 활동하는 TT Club이 중심이 되어 출자한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여 중앙등록기관으로 활동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중앙등록기관은 무역관련 어느 조직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中立的인 特性을 지니며, 내부적으로도 기능별로 조직을 분리함으로써 정보흐름의 독점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 있다.

둘째, 메시지의 안전성 보장에 있어서는 NCITD 방식의 IAC나 CMI 방식의 PIN 코드 대신에 현재까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RSA 방식¹¹⁶⁾의 디지털 서명을 메시지 전송에 채택하고 있으며, 사용자 시스템의 접속에도 IC Card¹¹⁷⁾를 활용하여 안전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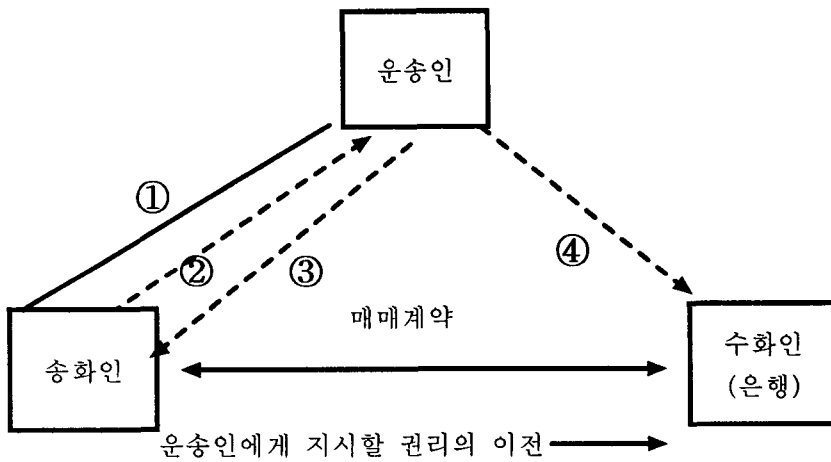
셋째, 비록 CMI가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CMI 규칙을 제정하였고, 각국에서 전자거래의 법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는 있으나 모든 국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무역거래가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法的 空白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거래 당사자간에 교환약정(Interchange Agreement)을 통해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Bolero Project에서는 이러한 교환약정을 일 대 일의 관계가 아니라 다자간 관계로 전환한 'Rule Book'을 도입함으로써 실용화 가능성을 높였다.

Bolero Project에서 電子式 船貨證券이 流通될 수 있는 것은 當事者間의 契約에 의해 권리의무를 주고 받기 때문이다. 즉, 지시식 선화증권의 경우 선화

116) RSA 방식은 1978년 미국 MIT의 R. Rivest, A. Shamir, L. Adleman 등의 고안에 의한 암호화 방법을 말한다. 무작위의 2개의 상이한 素數를 기초로 하여 암호화 키(비밀키)와 복호화 키(공개키)가 정해진다.

117) IC Card(Intelligent Chip Card) : IC 메모리를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한 것으로 마크 네딕 스트라이프에 비해 기억용량이 월등히 크고 안전성이 높아 전자화폐 등에 활용이 검토되고 있다.

증권에서 이전되는 것은 물품인도청구권이며 이는 전자식 선화증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종이 선화증권인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의 이전이 무역관습과 법률로 확립되어 있지만 전자식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로 해소한다면 전자식 선화증권의 유통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Bolero Project의 전자식 선화증권을 통한 물품인도청구권의 이전과정을 그림을 통해 살펴본다면 <그림 3>과 같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Bolero의 電子式 船貨證券의 物品引渡請求權의 移轉過程¹¹⁸⁾

①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된다. 운송인이 송화인의 지시에 의한다는 계약조건이 포함된다.

② 송화인은 운송인에게 차후로는 수화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것을 지시한다.

③ 운송인은 이 지시를 확인한다.

④ 운송인은 수화인에게 물품을 소지하고 있음과 이제부터 오직 수화인으로부터만 인도지시를 받을 것임을 통지한다.

만일 수화인이 그러한 권리를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할 의사가 있는 경우 앞의 ②~④의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118) P. Mallon, Replicating the Transactional Functions of a 'Negotiable' B/L, www.boleroltd.com/library/public.htm.

한편, 상기의 이전과정에서는 단순히 물품의 청구권만이 아니라 운송계약 자체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이전되어 송화인과 운송인과의 계약조항이 수화인과 운송인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은행이 선화증권의 질권자(pledgee)가 되는 경우에도 수화인 대신에 銀行이 指示式 船貨證券의 指名權을 行使할 수 있도록 계약하면 된다.

3. Bolero Project의 法的構造와 「Rulebook」의 意義

이제까지 전자적 거래가 널리 실용화되지 못한 이유는 기술적 문제이러기 보다는 이를 규율할 法規의 不安定性 때문이었다. 특히 전자적 거래에서는 국적을 달리하는 다수 상대와의 계약적 관계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법체제에서 수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자료는 그 자체로서는 문제를 야기하지 않지만, 이것이 계약이나 유통성 증권, 대금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요구된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Bolero는 18개국의 국내법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Rule Book을 작성하였다. 즉, Bolero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자와 사용자 협회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형태의 當事者들을 規律하고 있는 法的關係는 모두 契約에 根據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내용이 전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Rule Book이라 할 수 있다.

Rule Book은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환약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활용되어온 교환약정과는 확연히 틀린 점을 지니고 있다. 즉, 기존의 교환약정은 전자적 거래의 당사자간 일 대 일의 관계에서 주고 받는 것이었지만, Bolero의 Rule Book은 Bolero가 구현하는 전자식 무역서류의 사용자로 구성된 Bolero Association Ltd.의 구성원이 이에 同意하는 署名을 義務化함으로써 모든 사용자를 구속하는 多者間 交換約定으로 전환된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교환약정은 거래 상대가 달라짐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여 체결되어야 하므로 거래 상대수에 비례하여 교환약정의 수도 많아지며 수시로 많은 거래 상대와 거래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교환약정의 체결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와는 달리 Rule Book은 자신이 서명하였다면 다른 모든 서명자와의 거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므로 일일이 교환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수시로 多樣한

去來相對와의 去來가 可能해진다. 이러한 Rule Book은 1999년 6월 현재 세 번째 초안이 작성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상업적 서비스가 실시되기 전까지 완비하여 사용자의 서명을 받아 발효될 예정이다. Rule Book을 통해 규정된 Bolero의 전자식 선화증권의 실용방법을 요약해보면 <表 1>과 같다.

<表 1> Bolero의 電子式 船貨證券의 當事者別 機能 範圍¹¹⁹⁾

기능	당사자	운송인	송화인 (shipper)			소지인 (holder)				기명 수화인
			비소지인	소지인	지시식 소지인	지시식	질권자	지참인식	단순	
신규 발행		○	×	×	×	×	×	×	×	×
변경 요청		×	×	○	○	×	×	×	×	○
소지인(holder)의 지명		○	×	○	○	○	○	○	○	×
지시인의 지명		○	×	×	○	○	×	○	×	×
백지 배서		×	×	×	○	○	×	×	×	×
지참인(bearer)의 지명		×	×	×	○	○	×	○	×	×
수화인의 지명		○	×	×	○	○	×	○	×	×
질권자의 지명		×	×	×	○	○	○	○	×	×
질권의 집행		×	×	×	×	×	○	×	×	×
질권의 해제		×	×	×	×	×	○	×	×	×
제시		×	×	×	○	○	○	○	×	○
종이로의 전환		×	×	○	○	○	○	○	×	○

Bolero Project의 출현은 以前에 나타났던 電子式 船貨證券의 實用化와는 다른 차원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전까지의 실용화 유형은 실상 전자식 선화증권의 실용 가능성에 대한 시험차원에서 시도되었던 것임에 비하여, Bolero Project는 전자식 선화증권은 물론 다른 모든 貿易書類의 統合電子化가 可能하다는 前提下에 商業的 實用化를 追求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전자적으로 유통성 선화증권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Bolero Project를 추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체들의 업종을 살펴보면 이러한 상황이 더욱 쉽게 확인된다. 즉, 컨소시엄 주체 17개 조직¹²⁰⁾ 중 11개 조직이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업이나 조직으로서, 이는 곧 貿易書類의 電子的 實

119) P. Mallon, Rule Book : Transfer Functions, <http://www.bolero ltd.com/library/public.htm>

120) Bolero 컨소시엄 참가 기업 및 담당 내용에 대하여는 安秉壽, 前揭論文, p. 27 참조.

用이 이론과 법규의 골레에서 벗어나 정보통신업계의 商業化 對象이 될 만큼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로써 이제까지의 종이 서류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관습은 전자식 서류의 실용화에 따른 변화를 정면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IV. 機能的 接近方法에 따른 TradeCard System의 展開

1. 出現背景과 基本 概念

SWIFT와 TT Club에 의한 Bolero Project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무역센터협회¹²¹⁾를 비롯한 몇몇 기업¹²²⁾은 TradeCard¹²³⁾라는 명칭으로 수출입 서류의 전송과 대금결제 방법을 전자화하려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TradeCard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로는 특히 貨換信用狀 거래에서 서류의 점검에 따르는 瑕疵(discrepancy)比率이 80%가 넘어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서류의 전자화 및 서류점검 절차의 자동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¹²⁴⁾ 이미 실제 거래의 시험¹²⁵⁾을 통해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한국과 홍콩을 시범이행 국가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TradeCard의 추진 내용 중 특기할 사항은 貨換信用狀을 排除하고 있다는

121)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WTCA)는 1970년에 창립되었으며 97개국 318개 무역센터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조직이다.

122)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지주회사인 E.M.Warburg, Pincus & Co., 정보통신회사인 GE Information Services, 보험회사인 Marsh 그리고 세계무역센터협회이다(<http://www.tradecar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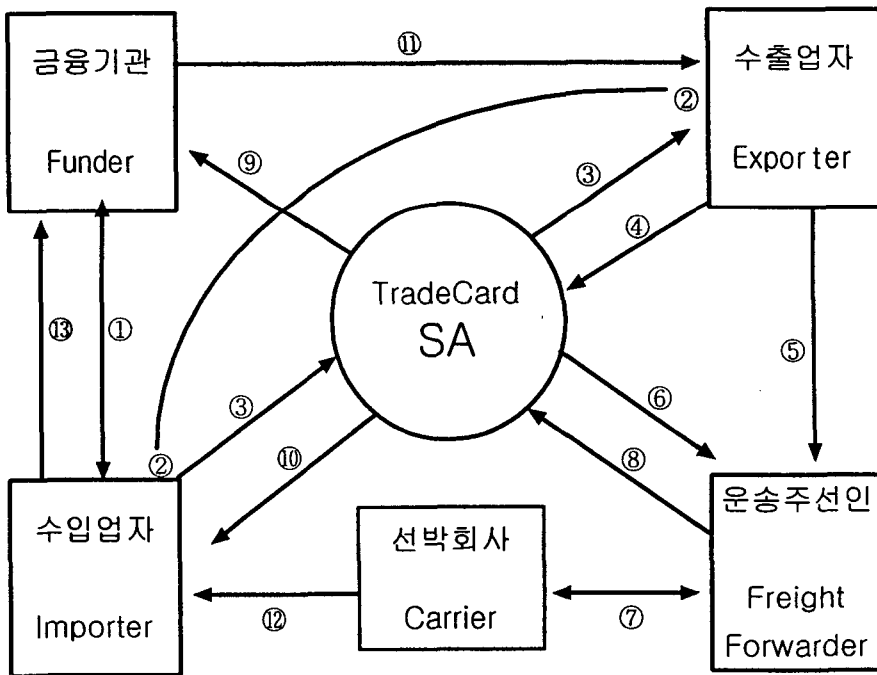
123) 'TradeCard'는 일종의 상표로서 고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표기한다.

124) FSTS, Ltd., Benefits, <http://trade-card.com/tcnew/html/benefit.htm>.

125) 1998년 4월 30일 미국의 수입자 Avalon Products와 대만의 수출자 Most-Brite 사이에서 21,600 US\$의 유모차 매매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 거래에서 미국 제3위의 은행인 Nation Bank가 신용을 공여하였고, 대만에서는 Standard Chartered Bank in Taipei가 지급은행으로 참가하였다(<http://www.tradecard.com>)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11월 8일 LG 상사가 미국의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킨텀 및 아이오메가사와 정식 거래에 들어갔다고 보도되었다(한국경제신문 1999.11.23).

것이다. 즉, 신용장 개설은행의 서류점검에 해당하는 기능을 TradeCard 시스템이 수행하며 銀行은 단지 資金의 供與만을 擔當하는 役割에 局限된다는 것이다. 또 운송물품을 대표하는 서류로서 선화증권은 언급되지 않고 있어¹²⁶⁾ 운송 중 전매를 하지 않는 소규모 제품거래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본지사간 거래 등이 활발한 대기업들이 신용장 방식의 결제를 회피하는 반면에 신용도가 낮아 신용장 방식의 결제에 의존하는 中小規模 수출입업체의 애로사항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호응을 예상할 수도 있다.

2. 運用節次 및 實用上의 特徵



<그림 4> TradeCard 시스템의 貿易去來 處理 節次

126) 그러나 전자식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을 실용하는 것을 표명하고 있고, 명시적으로 전자식 선화증권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TradeCard의 기술적 기반과 역량은 Bolero Project와 커다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전자식 선화증권을 취급서류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radeCard 시스템을 통한 무역거래의 흐름을 圖示하면 <그림 4>와 같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입업자는 금융기관(신용공여기관)에 신용공여한도를 신청하고, 은행은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쳐,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한다. 이때 금융기관(은행)을 Funder(Bank)¹²⁷⁾라고 칭한다.

②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무역거래조건을 협상 및 합의한다.

③ 수입업자는 POPFI¹²⁸⁾를 작성해서 디지털 서명을 첨부하여 TradeCard의 중앙처리장치(System Administrator : SA)로 전송한다. TradeCard SA는 POPFI의 기재내용과 수입업자의 신용한도를 검토한 후 이를 수출업자에게 전송한다. 수출업자는 이를 확인하여 전자서명함으로써 무역계약을 체결시킨다.¹²⁹⁾

④ 수출업자는 TradeCard SA에 선적지시서(선적, 보험, 검사 관련)를 발송한다.

⑤ 수출업자는 운송주선인에게 수출화물을 인도한다.

⑥ 운송주선인은 TradeCard SA에 선적지시서를 요청 및 접수후 선복의 수배 등 선적을 준비한다. 또 보험회사와의 업무를 처리한다.

⑦ 운송주선인은 화물을 선박회사에 인도하고 선박회사는 운송주선인에게 운송서류¹³⁰⁾ 초안을 발급한다.(이 과정은 TradeCard의 통신망에서가 아니라 당사자간 EDI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⑧ 운송주선인은 전자서명된 최종 운송서류를 작성하여 TradeCard 시스템이나 EDI를 통해 TradeCard SA로 전송한다. TradeCard SA는 운송서류를 비롯한 다른 전자식 서류들과 POPFI를 대조 점검한다. 이 점검은 TradeCard SA가 개발한 자동화 방법에 의한다.

⑨ TradeCard SA는 서류가 일치하는 경우, 신용공여기관에게 대금지급을 할 것을 수권한다. 만일 기한부지급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지급지시를 보류한다.

127) Funder는 은행으로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다른 금융기관도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128) Purchase Order/Pro Forma Invoice(구매주문서/견적송장)의 약자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전자거래계약서가 된다.

129) 이렇게 TradeCard 시스템을 경유하는 메시지는 Bolero Project에서와 마찬가지로 UN/EDIFACT 표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서명 역시 RSA 방식의 공개키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양 방식의 기술적 기반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130) 이 운송서류는 현재로는 전자식 해상화물운송장이나 전자식 항공화물운송장이지만 전자식 선화증권도 조만간 실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⑩ TradeCard SA는 전자식 운송서류 및 보험증권을 수입업자에게 전송한다.
- ⑪ 신용공여기관은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 ⑫ 수입업자는 전자식 운송서류를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수입화물을 인도받는다.
- ⑬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신용공여기관에 상환하면 거래한도가 회복된다.

이처럼 TradeCard 시스템에서는 당사자의 계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은 전자적 방식으로써 POPFI라고 불리는 정형화된 형식으로 작성되어 관련書類의 電子化 및 一致性 點檢의 自動化를 가능케 한다. 이와 같은 정형화된 형식의 전자적 계약서는 실상 SWIFT등에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활용되고 있던 방법이며, 향후 무역거래의 전자화에 따라 널리 보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TradeCard 시스템은 기술적 기반이나 추구하는 방향이 Bolero Project와 거의 유사하며 이에 따라 두 방식간의 提携 혹은 競爭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두 방식 모두 본격적인 상업적 실용화에 접어들지 못한 상태이지만 상업적 실용화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TradeCard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신용장을 배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방식이 본격적으로 실용화되는 경우 은행은 단지 신용(자금)공여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므로 이제까지 신용장을 통하여 향유하던 무역매매에서의 중심적 지위는 당연히 위축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한편, 이보다 먼저 출현한 Bolero Project와 함께 TradeCard 시스템은 모두 貿易去來의 電子化를 基本的 前提로 삼고 있어 향후의 무역관습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 예견된다. 즉, 이제까지 종이 서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던 무역거래가 우선은 節次의 電子化로부터 출발하여 漸進的으로는 貿易慣習 自體의 變化까지도 가능해지리라는 것이다.

V. 結 論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종이 서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던 것에 바탕을 둔 상관습 및 법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

를 바탕으로 기술적 가능성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상업적 실용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국제전자상거래의 상업적 실용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시도인 Bolero Project와 TradeCard System을 몇 가지 측면으로 상호 比較함으로써 향후 정착될 국제상관습의 윤곽을 가늠하고자 한다.

<表 2> TradeCard 시스템과 Bolero Project와의 比較 要約

	TradeCard시스템	Bolero Project
메시지 표준	UN/EDIFACT	좌동
메시지 보안	RSA방식의 디지털 서명	좌동
상업화 목표	신용장 방식에서 벗어난 무역거래의 전자화	전자식 선화증권의 구현 및 무역서류의 전자화
주요 서비스 대상	중소 무역업자	선화증권 거래 관련자
우리나라 참여여부	HRD Group Korea사, LG 등이 참여	국내업체 참여 없음
무역매매에서의 역할	전자적 계약의 확인 계약이행여부의 확인 대금지급의 결정	전자서명의 인증 무역서류의 관리 통신방법의 제공
주요 추진 주체	세계무역센터협회, GE	SWIFT, TT Club
신용장과의 일치성 확인(서류점검)방법	TradeCard SA의 컴퓨터에 의해 자동수행	종이로 출력하여 점검. 전산개발은 선택임.
비용 절감	신용장 관련 비용의 절감	선화증권지연과 관련된 비용 절감
서비스의 특징	신용장없이 무역거래 수행	선화증권의 전자화

두 시도는 모두 현재까지 출현한 최선의 기술과 표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貿易書類의 電子化와 그 中繼役割을 遂行하겠다는 목표도 같다. 그러나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방향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Bolero Project에서는 電子式 船貨證券의 流通을 中心으로 하여 무역서류의 전자화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비하여 TradeCard 시스템에서는 무역대금의 결제과정에서 신용장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설계한 시스템내에서 계약의 체결, 계약이행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공, 그러한 書類의 一致 與否 點檢과 代金支給의 授權指示 등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 TradeCard 시스템에서는 현재까지 전자식 선화증권이 아닌 운송장만을 운송서류로 상정하고 있다.¹³¹⁾ 따라서 두 유형간의 서비스의

131) 전자식 운송장의 구현은 전자식 선화증권의 구현과 비교하여 훨씬 용이하므로 실용화 초기에서는 전자식 운송장을 도입하고 이후 전자식 선화증권을 도입할 것으

차이는 이를 선호하는 사용자의 차이로 이어지며 양 유형의 존립과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1. 貿易去來上에서의 役割

Bolero Project에서 BOL(Bolero Operations Ltd.)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즉, 첫째, 전자식 선화증권을 비롯한 무역서류의 전자화에 따른 眞正性의 確保를 위한 전자서명의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둘째, 전자적 권리이전을 위한 記錄의 更新 및 維持 役割, 그리고 셋째, 전자적 권리이전에 필요한 通信 方法의 提供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능은 BOL 내부에서도 별도의 기관으로 나누어져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BOL은 전자문서의 권리이전 이외의 당사자간의 계약체결이나 계약의 이행과정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TradeCard시스템에서 SA(System Administrator)는 무역거래가 전자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통신기반의 제공은 물론, 전자적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계약의 이행 및 계약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中繼役割을 擔當한다. TradeCard 시스템의 SA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든 무역관련 당사자들과 관련을 맺으며, 특히 계약의 이행여부를 결정짓게 되는 전자서류와 계약서와의 일치성 판단기능을 수행한다.

양 유형의 역할에 있어 근본적 차이는 Bolero 쪽이 무역매매의 과정에서 전자메시지의 관리역할만을 수행하는데 비하여 TradeCard 쪽은 계약의 체결과 계약이행 여부의 확인, 대금지급의 결정 등에 참여하여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참가자의 유형도 서로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즉, 소규모 무역업체의 경우 무역거래에 관련되는 많은 절차를 자신이 직접 수행해야만 하는 Bolero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보다 TradeCard 시스템에서의 종합적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업무수행과정이 단순화되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특히 운송 중의 轉賣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개설에 따른 은행과의 번거로운 節次 및 手數料를 回避하려는 무역업자들에게는 상당한 호소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역매매과정에 빈번한 전매가 예상되는 거래의 관련 당사자 또는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자신

로 예측된다.

의 독립적 업무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당사자는 Bolero 쪽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무역서류의 전자화에 있어서는 입장이 같은 두 유형이지만 무역매매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서비스를 선호하는 사용자층에 차이를 보일 것이 예상된다.

2. 推進組織의 構成

SeaDocs의 전자식 선화증권의 실용화 실패는 현행의 선적서류 전자화 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특히 SeaDocs의 실용화 시도에 있어 은행이 전자식 선화증권의 관리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점에 대하여 무역업계에서는 금융을 지배하는 은행이 무역거래까지 지배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강한 반발을 보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Bolero Project의 추진 초기에는 금융기관이 출자하여 만들어진 SWIFT의 참여가 회의적이었으나, 특정 국가나 특정 은행에 지배되지 않는 중립적 입장임을 내세워 결국 참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Bolero Project는 금융기관이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不利點과 함께 거래의 대량 금융거래를 문제없이 수행해온 SWIFT의 기술과 신용을 활용할 수 있다는 利點을 함께 얻게 되었다. 한편, Bolero Project의 또 다른 주요 추진체인 TT Club은 컨테이너 운송인과 운송주선인 및 항만관리인 등으로 구성된 정평있는 P&I Club으로 Bolero Project의 추진에 있어 운송업계를 대표하게 되었다. 그러나 Bolero Project의 추진을 이끌고 있는 구성원 중에는 무역업자를 대표할 만한 조직이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TradeCard 시스템은 무역업계의 입장을 대표하는 세계무역센터협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와 지주회사 등의 자금투자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貿易業界의 支持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Bolero Project의 추진 주체의 구성은 TradeCard 시스템과 비교할 때 무역매매의 거래당사자인 수출업자, 수입업자들의 立場을 고루 反映하고 지지를 받기에는 다소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電子書類의 點檢方法

Bolero Project는 기존의 서류중심 무역매매 관습에 저항하지 않는다. 즉, 현재의 무역거래에서 나타나는 절차를 전자적으로 충실히 재현하려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환신용장 방식의 거래에서 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서류를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역할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점검은 은행에 혼란을 야기시킨다. 즉, 전자적 메시지 형태로 전달받은 서류를 信用狀 條件과 一致하는지의 與否를 判斷하기 위해서는 종으로 출력하거나 또는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개발¹³²⁾하여 전자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경우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TradeCard 시스템에서는 무역 매매계약의 체결을 비롯하여 운송서류를 포함한 선적서류의 점검이 TradeCard SA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은행은 그 지급지시에 따른 資金供與者로서의 役割만을 수행한다. 따라서 은행이 서류 점검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결국 Bolero Project에서는 전자적 메시지에 의한 무역서류의 전자화 및 유통성을 확보하는 획기적 방법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이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종으로 출력하거나 혹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는 EDI의 장점 중 하나인 종이 출력의 배제와 서류작업의 감소라는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 은행의 입장에서는 실용화에 참여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4. 電子書類의 實用에 따른 費用의 負擔

Bolero Project에서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¹³³⁾ 구체적 금액은 미정이지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입회비(Joining Fees), 연결비용(Connections Fees)

132) 이러한 전산시스템은 미국의 Chase Manhattan 은행에서 개발된 예가 있다.

133) <http://www.boleroold.com/site.htm>.

및 年會費(Annual Charges), 거래수수료(Transaction Charges)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費用을 負擔한다고 해도 기존에 발생되던 비용 중의 일부는 변함없이 발생한다. 즉, 신용장 개설 및 조건변경, 통지에 뒤따르는 수수료는 Bolero방식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수출입업자는 이러한 비용을 여전히 부담하여야 한다. 즉, 전자식 선화증권을 실용화하는데 기존에 발생하던 비용은 절감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TradeCard 시스템에서도 年會費(annual licensing fee)와 거래비용(transaction fee)은 부담해야 하지만,¹³⁴⁾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TradeCard SA가 대금지급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 관련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장을 활용하는 사용자에게는 Bolero 쪽이 TradeCard 쪽에 비하여 다소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역시 Bolero의 서비스 확산에 불리한 요소로 보인다.

5. 法的 問題에 대한 對備 與否

Bolero Project의 경우 추진 초기부터 법률적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특히 세계의 주요 국가가 망라된 18개 法域에 대하여 선화증권을 비롯한 무역서류의 전자화가 법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실행함으로써 법적 문제발생의 가능성을 낮추려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탄생된 Bolero의 Rule Book은 현재의 국제 규칙과 각국 국내법에서 대비치 못한 법적 공백을 채울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모든 사용자는 이에 동의하는 의미로 서명을 해야만 한다. 이는 특히 전자식 선화증권이 아직 각국에서 동일한 규범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점에 대한 법적 대응책으로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TradeCard 시스템은 현재까지 법률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Bolero 측의 Rule Book은 TradeCard 시스템에서도 참조되어 그들의 법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자료로 활용될 것이 예측되며, 아울러 Bolero의 전자식 선

134) TradeCard에서는 이 비용으로 거래 건당 미화 약 100 \$에서 125 \$를 예상하고 있다 (<http://trade-card.com/tcnew/html/benefits.htm>).

회증권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경우 향후의 전자무역관습을 규율할 중요한 법적 기반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參 考 文 獻

- 문희철·심상렬, 무역자동화, 무역경영사, 1996.
- 梁暎煥·徐正斗, 國際貿易法規, 三英社, 1994.
- 梁暎煥·吳元奭·徐正斗, 信用狀論, 三英社, 1993.
- 吳元奭, UN統一賣買法, 三英社, 1998.
- _____, 國際運送論, 博英社, 1998.
- 이충배·이상진, 전자상거래의 이해와 활용, 두남, 1999.
- 朴明燮·趙宗柱, “EDI의 國際商業의 使用을 위한 모델 交換約定의 法的 問題點,” 韓國海運學會誌 第 26號, 1998.7.
- 朴錫在, 스탠드바이(Standby)信用狀의 活用上의 問題點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 校 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96
- 孫晉華, “電子商去來에 관한 立法의 현황과 과제,” 比較私法 第5卷2號, 1998.12.
- _____, “電子署名의 法的 課題,” 比較私法, 第5卷 1號(通卷8號), 1998.6.
- 安秉壽, “電子式 船積書類의 實務適用實驗의 結果考察,” 貿易商務研究 第 11卷, 韓國貿易商務學會, 1998.2.
- 이진우, “전자거래의 법적검토,” <http://bora.dacom.co.kr/~kafil>, 1996.12
- 정완용, “인터넷의 이용과 그 법적 규제,” 형사정책연구소식 제41호 (1997. 5)
- _____, “電子商去來와 電子署名法,” 比較私法, 第5卷 2號, 1998.12.
- 崔竣璿, “UNCITRAL電子商去來모델법과 우리 나라의 電子去來基本法(案) 比較,” 比較私法 第5卷 2號, 1998. 12.
- 한웅길, “전자거래와 계약법,” 比較私法 第5卷2號, 1998.12.
- Emmelhainz, M. A.,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A Total Management Guide, Van Nostrand Reinhold, 1990
- Gifkins, M. & Hitchcock, D. (ed), The EDI Handbook Trading in the 1990s, Blenheim Online, 1988.
- Honnold, J.,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Third Edition, KLI, 1999.
- ICC, Incoterms 1990.
- ICC, Incoterms 2000

- _____,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
- Kritzler, A.H., Guide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KL&TP, 1990.
- Robert J. Thierauf, Electronic Data Interchange in Finance and Accounting, Quorum Books, 1990
- 新堀聰, 國際統一賣買法, 同文館, 1991.
- 日本貿易關係手續簡易化協會, 貿易手續のEDI化に係る法的諸問題, JASTRO, 1992.
- ABA, Digital Signature Guidelines (Aug. 1, 1996)
- Carr, I.M., "Current Developments Concerning the Form of Bills of Lading - Great Britain," Ocean Bills of Lading: Traditional Forms, Substitutes, and EDI Systems, KLI, 1995.
- IIBLP,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Fall 1997 Draft
- Livermore, J. & Euarjai, K., "Electronic Bills of Lading: A Progress Report,"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 28. No. 1, January, 1997.
- Savage, N. and Walden, I., "International trade Law and UNCID," EDI and Law, Blenheim Online, 1989.
- Thomsen, H. B., "Interchange agreement," EDI and Law, Blenheim Online, 1989.
- Walker, R., "1992: Maintaining the UK's Competitive Edge in EDI," in Mike Gifkins & David Hitchcock(ed.), THE EDI HANDBOOK Trading in the 1990s, Blenheim Online, 1988
- 江頭憲治郎, "電子式船荷證券のためのCMI規則について," 海法會誌, 復刊 第 34 號, 1990
- _____, "電子式船荷證券のための万国海法會規則と船積書類の革新," 安田火災記念財團叢書 No. 35, 1991.
- 内田貴, "電子商去來と法," NBL 600號(1996. 9.1)
- _____, "電子商去來와 法," 1997년 10월 24일 東亞大學校 강연원고
- 電子取引法制に關する研究會, "電子取引法制に關する研究會中間報告書," NBL 615號(1997. 4.15)
- [http:// www.unece.org/trade/rec26en.htm](http://www.unece.org/trade/rec26en.htm)
- <http://trade-card.com/tcnew/html/benefits.htm>
- <http://www.bolerold.com/site.htm>
- <http://www.iccwbo.org/guide2.htm>
- <http://www.kyungwon.ac.kr/~profsjh/ec/wp76.htm>

<http://www.law.upenn.edu/library/ulc/ulc.htm#ucc2>

<http://www.le.state.ut.us/~code/TITLE46/46-03.htm>

<http://www.nccusl.org/pressrel/2brel.html>

<http://www.swift.com/general/pages/factsfig.htm>

<http://www.trade-card.com>

<http://www.ttclub.com>

<http://www.un.or.at/uncitral/en-index>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WITH GUIDE TO ENACTMENT)

http://www.un.or.at/uncitral/english/sessions/wg_ec/wp-80.htm

<http://www.un.or.at/uncitral/english/texts/transpor/hamburg.htm#TOP>

田中英夫, 英米法辭典, 東京大學出版會, 1991.5.

한국경제신문 1999. 11. 23.

ABSTRACT

**The Comparison of BOLERO project and TradeCard system as
Settlement Method in International Trade**

Ahn, Byung Soo

BOLERO project and TradeCard System are attracted public attention as new settlement method that is able to substitute for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BOLERO is the business processes and methods, together with the digital information system, which are provided by Bolero International for communicating Messages and Documents and facilitating business transactions.

TradeCard aim to make international business-to-business e-Commerce easy, fast, inexpensive and secure while innovating current documentary compliance and financial settlement mechanism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the possibility of paperless trade. Since, this paper examine the international legal feasibility of these systems and compare the strength and weakness.

Key Words : Bolero, TradeCard, Electronic Commerce